

진단서 허위 조작 ‘부정행위’ 에 대한 성적 무효 처리 안내

최근 생성형 AI 이미지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위조된 허위 진단서로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진단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학생준칙에 의거하여 징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식으로 성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학사운영규칙 제31조 성적 무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의 성적은 F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출석 인정 절차를 악용한 위법행위로서, 성적 처리의 공정성을 해치고 학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 무 혁 신 처 장